

국제 입양 인정서를 통해 출생 국가에서 입양한 아동을 캘리포니아에서 재입양해야 하는 법적 요구 사항

2020년 1월 1일 현 Family Code(캘리포니아 가족법)(FC) 8919항에 따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외국에서 국제 입양을 완료한 경우라도 입양한 아동이 미국에 입국하기 60일 전에 또는 입양 아동의 만 16세 생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재입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아울러, FC 8919조항은 청문회 일정을 설정하기 위해 입양 신청서(adoption petition <<Adopt 200>>)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개요를 설명합니다. 입양부모가 60일 이내에 입양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입양 가정에 입양 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입양 기관이 입양 아동의 미국 입국 후 90 일 이내에 미서명 입양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입양부모는 이해합니다.

입양 신청서를 입양 기관에서 제출하는 경우, 사건 파일 레이블을 부착한 사본을 입양부모 및 입양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 한 기타 입양 기관에 업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. 양부모는 입양 기관이 FC 8919 조항의 요건을 성실하게 부합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지불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. 사무국은 본 법령에 따라 입양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양 기관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FC 8919.5 조항에 따라 입양 기관은 외국에서 입양을 완료한 입양 아동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달력일 기준 14 일 이내에 입양 아동의 도착 사실을 사회 복지 서비스 사무국(Department of Social Services)에 보고해야 합니다. 따라서 입양 부모는 입양 기관에 입양 아동의 도착을 보고하여, 입양 기간이 사무국에 이 사실을 법적 시효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본인은/우리는 아래 서명함으로써, 본인/우리가 담당 입양 사회 복지사로부터 입양 아동의 미국 입국 시 보고 요건 및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하는 입양 자녀의 출생 증명서 취득 요건, 그리고 불이행 시 잠재적으로 입양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 본인/우리는 FC 8919조항 및 FC 8919.5조항에 따른 재입양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.

예비 입양 부/모 서명:	일자:
예비 입양 부/모 서명:	일자:

입양부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아동을 재입양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가 발행하는 출생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받았고 이를 이해합니다. 양부모는 주 정부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입양 아동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 권리, 운전 면허 취득, 취업, 여권 취득, 미국에서 출국하는 항공 편 이용, 선거/투표권, 결혼, 또는 동거인 인증 취득, 그리고 공립 또는 교육 지원 신청 자격, 사회 보장 및 기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프로그램 이용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거나 심각한 권리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
담당 입양 사회 복지사 서명 및 기관 명:	일자: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